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585호 2017. 3. 29.(수)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7-37호 월곡마을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변경승인 고시 요청 3
 거창군 고시 제2017-38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협조 4
 거창군 고시 제2017-4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2017-3) 6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7-415호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
 엄 참여기업 모집 공고 7
 거창군 공고 제2017-416호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안내문 등 공시
 송달 공고(12월분) 22
 거창군 공고 제2017-417호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안내문 등 공시
 송달 공고(01월분) 24

거창군 공고 제2017-418호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등 공시송달
공고(01월) 26

거창군 공고 제2017-430호 중촌소하천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 28

거창군 공고 제2017-435호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0

회 람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월곡마을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변경**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2015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 '15년 착수한 월곡마을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대하여 **변경**승인하고,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4일

거창군수

1. 사업명 : 월곡마을 종합개발 사업
2. 사업의 목적 :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 삶의 질 개선,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공동체문화 회복을 위한 주민 역량강화
3. 사업구역 :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월곡마을
4. 마을규모 : 법정리 1개, 행정리 1개
5. 면적 : 221ha (농경지 28.9ha, 임야 157ha, 기타 35.1ha)
6. 가구·인구 : 39호(농가 27호, 비농가 12호), 인구 62명
7. 사업비 : 975백만원(국 682, 도 88, 군 205)
8. 사업의 효과 : 쾌적한 마을 정주환경 유지, 공동체 문화 회복 및 활동 활성화, 거창 남부권의 주요 연계 관광지로서의 자리매김
9. 사업기간 : 2015년 ~ 2017년(3년간)
10. 시행자 : 거창군수
11.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사업지역 주민의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참여의식과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한 주체의식.
12. 주요사업(**변경**)개요
 - 가. 기초생활기반확충 : 달이실센터, 달이실 사랑방 조성, 달이실 마실기 정비
- 달이실센터 건축구조 변경 및 다락방 추가, 달이실 사랑방 찜질방 설치 삭제 반영
 - 나. 지역역량강화 사업 : 교육, 선진지견학, 컨설팅, 홍보, 마을경영지원 등
13. 세부사업계획이나 상세한 내용은 거창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농촌개발담당(☎940-8258)로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3. 29.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자하길 185-119 외 5건(부여 5건, 폐지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989-1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소만2길 31	2009-04-01	2017-03-29	마을 북동쪽 모래독걸 남쪽에서 아월천 서쪽일때까지의 논들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2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794, 1793, 1843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삼포길 84-42	2009-04-01	2017-03-29	삼포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1810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자하길 185-119	2009-04-01	2017-03-29	고종32년(1896년) 거창부사 홍세영에 의해 붙여졌다고 전해지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4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1749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야길 88-25	2009-04-01	2017-03-29	마을 뒤에 대밭이 있어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5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714-6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월포1길 146	2009-04-01	2017-03-29	수월천 소에 달이 비치므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 도로명주소폐지

일련 번호	폐지도로명주소	고 시 일		폐지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창대로1길 32-3	2009-04-01	2017-03-29	건물철거	

고시 제2017 - 4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03월 29일

거 창 군



신청인	거창군수 (기업지원과장)	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하천명 (하천등급)	위천(지방하천)		
공사 (점용 · 사용) 개요	위치	경남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4-26번지 외 8필지	
	면적	일시점용: 904㎡ 영구점용: 514㎡	
	점용기간	일시점용: 2017년 04월 01일부터 ~ 2017년 6월 29일 영구점용: 2017년 04월 01일부터 ~ 영구	
	목적 및 사유	남산농공단지 방음벽 설치	

거창군 공고 제2017-415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고 제2017 - 21호(2017.1.13.)의 「신·재생에너지보급 - 융·복합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군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 설치 기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 3. 23 .

거 창 군 수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참여기업 모집 공고

1. 사업개요

가. 목 적 : 2018년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공동 참여기업 선정 (컨소시엄 구성)

나. 사 업 명 : 2018년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다. 대 상 : 거창군 기초면, 신원면, 남상면 일원(개인주택, 공공 및 민간건물 등)

※ 에너지원 : 태양광, 태양열

라. 사업내용

1) 감악산풍력발전단지 주변마을 및 가조온천지구내 에너지자립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융·복합지원) 사업 지원 대상 규모와 내용에 맞는 에너지원 발굴

2) 사업의 타당성 및 계통연계, 종합 모니터링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 제시

3) 에너지원 종별 적격업체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대상지 현장여건에 따라 사업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마.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8. 12. 31

바. 기타사항 : 한국에너지공단 2018년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내용에 따름

2. 신청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4. 14.(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거창군청 경제교통과 에너지담당 사무실)

다.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별첨 2>

- 용량산출근거, 사업비 조달계획, 관련법 저촉여부 포함

2) 전체 사업계획 조감도(A3규격, 별도 형식 없음) 1부

3) 설치예정 장소 및 건물 사진(A4규격, 별도 형식 없음)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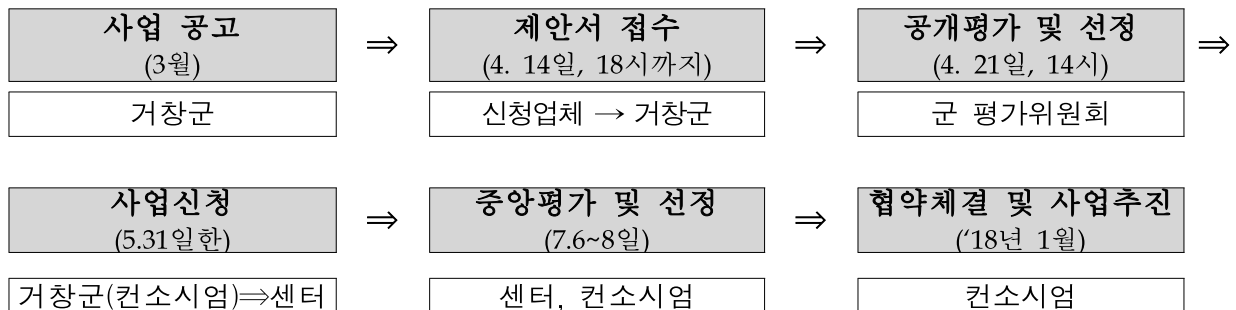
4) 시스템 주요설비 설치 사양(인증제품 및 시험성적서 포함) 및 단가 1부

5) 평가지표 증빙자료 각 1부

라. 문의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에너지담당(055-940-3713)

3.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필요시 발표 요청함)

4. 추진일정



※ 상기일정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5. 특기사항

가.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참여기업 선정 후 협약체결 공모신청

나. 본 컨소시엄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것으로 미선정 시 컨소시엄은 자동으로 파기됨

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중앙평가에서 선정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여건에 따라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 될 수 있음

6. 의무부여 및 지원제한

가. (이해관계자 사전협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력 상계처리 가

능 여부 및 각종 인·허가 관련기관(한전, 가스공사 등)과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사전협의를 완료된 사업만 신청 가능하다. (참여기업 자격) 2017년 보급사업 참여기업 선정업체를 우선 자격

대상으로 하며,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적격여부 결정

다. (설비 시스템 설계) 사업대상지 여건을 고려한 수요부하와 원별 적정 설치용량 등을 분석하여 최적화 시스템 설계 수행

1) (설계범위) 입지 및 설치여건 분석, 전기사용량 등 부하분석, 계통 연계성 분석, 에너지원별 설치용량 분석, 인허가 조건·절차 등 조사

* 수요처 전기요금, 냉난방 비용 등을 근거로 적정 설치용량을 설계하여 과다 용량 설치 방지

2) (최적 설계결과 검증) 필요시 설계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설계결과를 반영하여 원별 시스템 구성 및 설치용량 등 사업계획서 조정·보완 가능

라. (시공기준 준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보조금 지급보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마. (인증제품 확인)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인증제품이어야 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한국인정기구(KOLAS)로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함

* 인증제품 : 태양광(모듈 및 인버터), 태양열(집열기)

* 인증제품 확인 : 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 우측중앙 “인증제품” 메뉴

바.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의무준수) 해당시설 및 장비의 검수·확인 후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제조사 및 시공부분의 하자보증서(하자보수보증 요율은 협약금액 총사업비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경우는 5%)를 제출

사. (사후관리) 본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관리주체는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이며, 컨소시엄은 설치 후 가동되는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5년)와 하자보증(하자이행 보증기간, 5년)을 의무적으로 실시(관련 지침에 따라 센터에 정기적으로 결과 보고)하여야 함

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관리

1) 사업대상지 내 가동되고 있는 전 설비의 운전현황에 대한 확인·점검·제어 등이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설비의 개별 현황판과 웹 기반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을 함께 구축

2) 운영기간 동안 설비의 모니터링 데이터(에너지 생산현황)와 운전경험

(고장 원인) 등 Track-record 내용을 센터에 제출

8. 기타 사항

가. 융복합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추진 절차, 사업비 확정 등의 제반 추진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21호(2017. 1. 13.)의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 지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나. 제안서는 컨소시엄 구성 업체별로 한건에 한하며, 추가제출, 수정, 변경, 보완이 불가함

다.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라.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컨소시엄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음

마.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틀림 없음” 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별 첨 1. 지원대상 융·복합 모델

2. 융복합 지원사업 업체 공모 신청서

3.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4. 시공능력 증빙서류 관련 안내사항

< 별첨 1 >

지원대상 융·복합 모델

1. 계통 연계를 할 수 없는 지역의 에너지원(2종이상) 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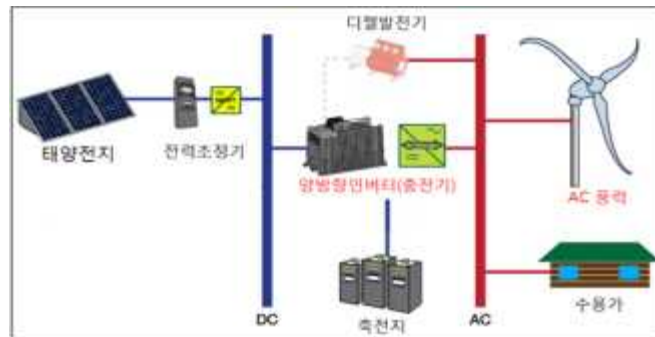
○ (내용) 발전원가가 높은 특정 지역(도서·벽지 등)에 태양광, 풍력 등을 함께 설치·지원하여 기존 디젤발전기 등을 대체

* (특징) 독립형 Small Grid 형태로 수출상품 전략화를 위한 Track Record 구축과 대체 에너지원으로 운영비 절감이 가능

* (사례) (2013년) 전남 삼마도, 인천 백아도 에너지자립섬 구축사업 완료

(2014년) 인천 덕적도, 전남 상태도 에너지자립섬 구축사업 진행 중

(2015년) 제주 비양도, 인천 지도, 충남 죽도, 안산 풍도 에너지자립섬 구축사업 진행 중



2. 계통 연계가 가능한 지역의 에너지원(2종 이상) 융합

○ (내용) 주택단지(신규 포함) 등에 태양광·소형풍력·연료전지 등의 전기설비와 태양열·지열 등의 열설비를 함께 설치·지원

* (감점 설치대상) 마을회관을 포함한 주택으로만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평가시 감점처리

* (권고 설치대상) 주택, 공공시설(주민자치센터, 체육관 등) 및 근린시설 등을 포함하는 사업

* (사례) 고창군 제로에너지타운 : 29가구에 태양광, 태양열·지열을 가구별로 설치하여 사용 중(화석 에너지 사용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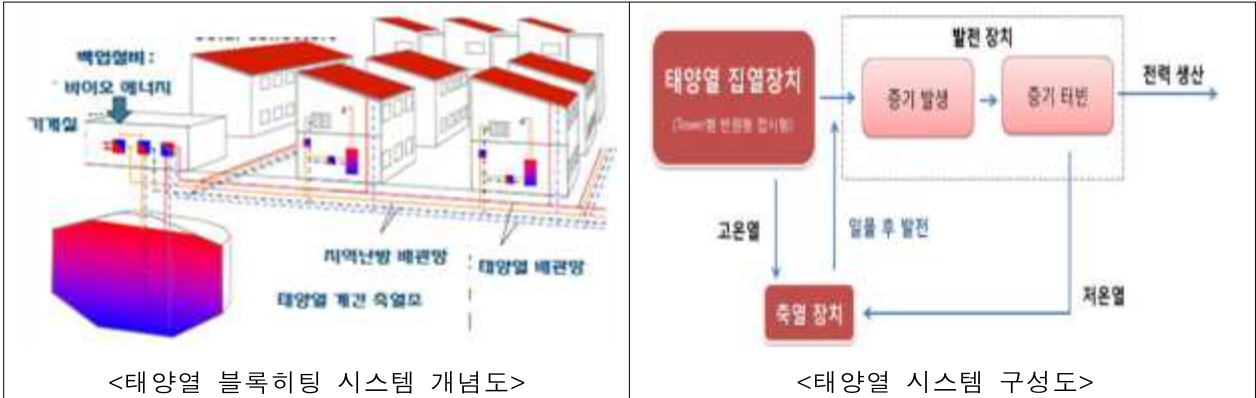
3. 계간축열조를 활용한 에너지원 융합

○ (내용) 봄~가을에 남는 태양열을 계간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동절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정용량 집열면적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태양열, 지열 등의 열설비와 함께 설치·지원

* (특징) 설비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용량 규모(최소 4천~10천㎡)의 집열 면적이 확보가 필요하며, 기존의 열설비, 지열 히프펌프, 바이오연료, 우드펠릿, 폐기물 등 他신재생 히팅시스템과 복합 구성 가능 (1MW 당 필요한 부지 = 28.3km²)

· (지역난방지역) 태양열로 발생한 온수를 열 공급관에 연계하여 공급

- (지역난방 비연계지역) 열 공급관, 펌핑·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별도 설치하여 독립적으로 공급
- 필요에 따라 지열시스템, 우드칩 보일러 등을 보조 설비로 설치하여 이용효율 극대화 추진
- * (사례1) 스페인(Andasol-1~3) : 510천㎡ 면적의 60만개 V자형 집열관 태양열 활용하여 연간 약 150MW 전력 생산
- * (사례2) 독일 크라이스하임(Crailsheim Hirtenwiesen) : 7300㎡ 압력 탱크 및 시추 열에너지 장치를 이용, 260가구 및 근처 학교 및 체육관 온수공급



4. 특정지역의 구역 복합(주택, 상업·공공건물 등)

○ (내용) 주택, 상업·공공건물 등이 혼재된 특정지역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의 설비를 설치·지원

- * (특징) 지역여건에 적합한 최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집중적으로 공급 가능
- * (사례1) 산업체의 부생수소를 활용한 수소타운 : 울산지역 산업체의 부생수소를 활용하여 주택 140가구, 공공·상업건물 3개소 등에 연료전지(총 195kW) 설치·지원('12년도)
- * (사례2) 축산분뇨 바이오 가스 등 신규 연료원을 활용한 수소타운 : 축산농가, 매립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 바이오가스 열분해·가스화를 통한 부생수소를 연료 원으로 활용한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지원
 - 독일(윤데마을) : 정부·금융기관·주민참여를 통한 중앙집중형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치, 메탄가스 발전시설 연계 하여 연간 7500GWh 전력 및 3,500GWh 열 생산
 - 벨기에 : 가축분뇨 과부족 해소를 위한 국가차원의 분뇨중개시스템('95) 도입



5. 친환경에너지타운 모델

○ (내용) 기피·혐오시설 또는 유휴부지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와 주민편익시설 등을 설치하여 환경개선과 주민수익을 동시에 구현하고 인근 마을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설비를 통해 전기·난방요금 절감

* (특징) 상기의 융복합지원 모델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문화·관광 및 주민편익시설 등을 유치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외의 비용에 대해서는 산업부 지원사항 없음

* (사례1) 발전소 인근 마을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에너지 사용료 절감효과를 창출하고, 발전소의 폐열, 폐수 등을 활용하여 유리온실, 시설하우스 등 농가 수익창출과 연계하여 기피지역에 대한 이미지 개선

* (사례2) 한센인마을, 폐광지역 등 경제취약 지역에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신재생설비를 구축하고,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생산 전기를 판매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 별 첨 2 > 사업계획서 양식

2018년 융·복합지원 사업계획서					
주관기관					
작성 자	소 속		전 화		
	성 명		핸드폰		
	Fax		E-mail		
1. 사업명					
2. 사업목적					
3. 지원대상 모델	모델번호		모델명		
4. 설치장소	○ 장소명 : ○ 소재지 : 시(군·구) 리(동)				
5. 참여기관 (컨소시엄 구성)	○ (기관명) - (역할)				
6. 세부사업	구 분		호수 (개소)	용 량 (kW, m ²)	설치대상 (주택, 상업·공공건물)
	신·재생 설비				
	보조 설비				
	합 계				

7. 사업비 신청내역

가. 재원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정 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 간	총사업비
신·재생 설비					
보조 설비		-			
		-			
설 계 비					
모니터링비					
합 계					

나. 사업비 산출 내역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산출근거	총사업비
신·재생 설비			
보조 설비			
설 계 비			
모니터링비			
합 계			

※ 시스템 주요설비 설치 사양과 단가 첨부 (첨부서류 3번 관련)

8. 사업내용

가. 사업추진방법

- 사업의 목표와 이해도
- 사업추진절차, 단계별 사업기간과 사업일정표
-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역할과 참여율
- 시설규모(용량 도출 근거) 및 설치 예정지역
- 사업비 산정과 분담, 자체 부담 사업비 조달계획 및 증빙서류 제출방법 등

나. 인프라 적정성

- 사업대상 지역의 지역특성
- 민원 및 관련법규 저촉 여부, 처리방안(전력 상계처리 가능여부 및 각종 인·허가 관련기관(한전, 가스공사 등)과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사전협의 내용 포함)
- 부대 인프라시설의 정비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 가능성 등

다. 사업추진 구체성

- 용·복합 사업내용의 기술적 타당성, 최적화 및 사전조사
- 사업의 공사·관리·운영계획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계획

라. 사후관리

- 향후 점검계획, 점검방법과 점검주기
- 유지보수 예산확보와 A/S 발생 시 처리방법
- 사후관리 및 하자보증기간 : 5년

마. 사업수행 능력

- 참여기관 현황(주요 사업현황, 기관특성 등)
- 사업 계획 상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9. 용·복합 기대효과

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연간 생산량과 화석에너지 대체량(toe/년)

나. 에너지이용 편익과 환경개선 효과 등

< 별첨 3 >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구 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계량 평가	시공능력	<input type="checkbox"/> 기술인력 보유현황	6	25	담당자 평가		
			<input type="checkbox"/> 기술인력 근무경력	4				
			<input type="checkbox"/> 시공실적	6				
			<input type="checkbox"/> 신용도	4				
		사업비산정	<input type="checkbox"/> 신재생에너지 투입비율	5				
		에너지원	<input type="checkbox"/> 우선지원대상 에너지원(가점)	(5)				
		지역업체	<input type="checkbox"/> 경남지역업체 포함여부(가점)	(5)				
	사업선정	<input type="checkbox"/> 설치대상 시설의 단일성(감점)	(-5)					
	비계량 평가	사업추진 방법	<input type="checkbox"/>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	7	70	평가 위원 평가		
			<input type="checkbox"/> 사업추진절차 및 단계별 사업기간의 적정성	7				
			<input type="checkbox"/>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역할 및 참여율의 적정성	7				
		인프라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사업대상 지역의 지역특성 반영도	7				
			<input type="checkbox"/> 관련법규 저촉여부, 처리방안의 적정성	7				
			<input type="checkbox"/> 부대 인프라시설의 정비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 가능성	7				
		사업추진 구체성	<input type="checkbox"/> 기술적 타당성, 최적화 및 사전조사 반영도 등	7				
			<input type="checkbox"/> 사업의 공사·관리 운영계획의 구체성	7				
			<input type="checkbox"/>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계획의 구체성	7				
		사후관리	<input type="checkbox"/> 향후 점검계획, 점검방법 및 주기, A/S발생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의 구체성	7				
		가격평가	발전량 대비 소요 사업비	년간발전 예상량(W) / 사업비(천원) × 100			5	5
합 계				100			100	

※ 동점자 처리방법 : 2017년 보급사업 참여기업 선정업체 참여율로 선정

<참여기업 평가관련 항목별 배점 및 세부기준>

○ 기술인력 보유현황(6점)

- 산업기사 및 기능사 배점의 합계는 최대6점을 초과할 수 없음

구분	국가 기술자격 보유인력	배 점		
		태양광	태양열	기 타
6점 한도	가. 산업기사 이상			
	① 8인 이상	6	6	6
	② 7인	5	6	6
	③ 6인	4	5	6
	④ 5인	3	4	5
	⑤ 4인	2	3	4
	⑥ 3인 이하	1	2	3
	나. 기능사			
	① 8인 이상	3	3	3
	② 7인	2	3	3
	③ 6인	1	2	3
④ 5인	0	1	2	
⑤ 4인 이하	0	0	1	

○ 기술인력 근무경력(4점)

- 산업기사 및 기능사 근무경력 배점의 합계는 최대4점을 초과할 수 없음

구분	태양광	기 타	배 점
4점 한도	가. 산업기사 이상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가. 산업기사 이상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① 600개월 이상	① 500개월 이상	4
	② 400개월 이상~600개월 미만	② 300개월 이상~500개월 미만	3
	③ 200개월 이상~400개월 미만	③ 100개월 이상~300개월 미만	2
	④ 200개월 미만	④ 100개월 미만	1
	나. 기능사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나. 기능사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① 500개월 이상	① 400개월 이상	2
	② 200개월 이상~500개월 미만	② 200개월 이상~400개월 미만	1
	③ 200개월 미만	③ 200개월 미만	0

○ 시공실적 배점기준(총점 6점)

- 설치용량(4점)

구분	태양광(kW)	태양열(m ²)	지열(kW)	기타(kW, m ²)	배점
4점 한도	3,000 이상	6,000 이상	6,000 이상	100 이상	4
	2,000~3,000미만	4,000~6,000미만	4,000~6,000미만	50~100미만	3
	1,000~2,000미만	2,000~4,000미만	2,000~4,000미만	20~50미만	2
	1,000 미만	2,000 미만	2,000 미만	20 미만	1

- 설치개소(2점)

구분	태양광	태양열	지열	기타	배 점
2점 한도	300 이상	200 이상	50 이상	100 이상	2
	300 미만	200 미만	50 미만	100 미만	1

○ 기업신용도 배점기준(총점 4점)

구분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등급기준	배 점
4점 한도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4
	기업신용평가등급 BBB+, BB0, BBB-, BB+, BB0	3
	기업신용평가등급 BB-, B+	2
	기업신용평가등급 B0이하	1

○ 신재생에너지 예산 투입비율 배점기준(총점 5점)

구 분	전체 사업비 중, 신재생에너지 투입비중	배 점
5점 한도	100%	5
	95%이상 ~ 100%미만	4
	90%이상 ~ 95%미만	3
	85%이상 ~ 90%미만	2
	80%이상 ~ 85%미만	1
	80%미만	0

○ 비계량 및 가격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구분(평가 분야)	배점	평가 항목	세부배점					
			수	우	미	양	가	
합 계	75							
비계량평가	사업 추진 방법	21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	7	6	5	4	3
			□ 사업추진절차 및 단계별 사업기간의 적정성	7	6	5	4	3
			□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역할 및 참여율의 적정성	7	6	5	4	3
	인프라 적정성	21	□ 사업대상 지역의 지역특성 반영도	7	6	5	4	3
			□ 관련법규 저촉여부, 처리방안의 적정성	7	6	5	4	3
			□ 부대 인프라시설의 정비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 가능성	7	6	5	4	3
	사업 추진 구체성	21	□ 기술적 타당성, 최적화 및 사전조사 반영도 등	7	6	5	4	3
			□ 사업의 공사·관리 운영계획의 구체성	7	6	5	4	3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계획의 구체성	7	6	5	4	3
	사후 관리	7	□ 향후 점검계획, 점검방법 및 주기, A/S발생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의 구체성	7	6	5	4	3
가격평가	5	□ 1순위 수, 2순위 우, 3순위 미, 4순위 양, 5순위 이하 가	5	4	3	2	1	

○ 사업계획 및 사업내용 평가 입찰 참가업체 수별 등급배분기준

평가참가 업체수	등급				
	수	우	미	양	가
1개	심사위원 절대평가				
2개	1	1			
3개	1	1	1		
4개	1	1	1	1	
5개	1	1	2	1	
6개	1	1	2	1	1
7개	1	1	3	1	1
8개	1	2	3	1	1
9개	1	2	3	2	1
10개	1	2	4	2	1

시공능력 증빙서류 관련 안내사항

□ 기술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국가기술자격증(또는 경력수첩) 사본 1부, 고용일자 확인용 증빙자료 사본 1부를 인원별로 제출
 - * 고용일자 확인용 증빙자료 :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중 1개보험 가입서류
- 기술인력 배점은 설비 시공기업의 기술인력 보유현황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근무경력을 합계하여 산정
-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신재생에너지지원별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하여 인정

□ 시공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시공실적증명서나 시공실적확인서를 제출
 - * 발주자 또는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센터 사업의 경우 설치 확인서로 제출가능(설치확인서의 개소가 많을 경우 리스트로 작성 첨부 가능)
- 시공실적 배점은 참여제안을 하는 시공기업의 설치용량과 설치개소 실적을 합계하여 산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서 정한 사업, 발전차액지원사업, 공공기관 자체사업, 민간자체사업을 인정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공동도급비율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비율대로 실적을 인정 하며,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업신용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
-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기재된 등급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사업계획서 접수일 이후인 것에 한함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가능 신용정보업자 :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코리아크레딧뷰로, 이크레더블

※ 위 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6년도 정부 보급사업 참여 시공기업 선정 기준 준용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사전안내, 검사 유효기간경과 안내, 검사 명령서, 운행정지명령서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정기검사 최고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 수취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 공고제목 : 자동차·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안내, 경과안내 및 검사 명령서, 운행정지명령서 등 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7. 03. 24. ~ 2017. 04. 07.(15일간)
- 공고대상 : 불임
- 문 의 처 : 거창군청 민원봉사실 민원담당 (☎055-940-3293)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기간이 계속 지연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에 의거 건설기계가 직권말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03월 23일

거 창 군 수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안내 우편물 반송내역(2016년12월)

연번	차량등록번호	소유자	반송일자	주 소	반송사유	비고
1	97마1604	엄*수	2016.12.0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창동로 ***	폐문부재	
2	97더5431	전*용	2016.12.0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창동로***	폐문부재	
3	경남98가3507	(주)대**기	2016.12.0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길 *	이사감	
4	경남03고1898	거창*****법인	2016.12.0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 *길 **	수취인불명	
5	경남50나2773	한*수	2016.12.0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길 ***,*/*	이사감	
6	74소9144	예***재 주식회사	2016.12.0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종산길 **,***호	이사감	
7	53고83790	PH*****CH	2016.12.0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길***	수취인불명	
8	36노7056	정*석	2016.12.07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길 ***-**	이사감	
9	97서1571	유*숙	2016.12.07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매학길**	수취인불명	
10	61나9505	손*목	2016.12.07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거안로 ****	이사감	
11	90가5592	김*희	2016.12.07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송계로 ****	이사감	
12	88오8920	권*현	2016.12.07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양향길 ***-**	이사감	
13	96부1850	심*복	2016.12.0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	이사감	
14	13두6153	농업*****업단(주)	2016.12.08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송계로 ***-***	수취인불명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사전안내, 검사 유효기간경과 안내, 검사 명령서, 운행정지명령서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정기검사 최고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 수취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 공고제목 : 자동차·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안내, 경과안내 및 검사 명령서, 운행정지명령서 등 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7. 03. 24. ~ 2017. 04. 07.(15일간)
- 공고대상 : 불임
- 문 의 처 : 거창군청 민원봉사실 민원담당 (☎055-940-3293)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기간이 계속 지연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에 의거 건설기계가 직권말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03월 23일

거 창 군 수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안내 우편물 반송내역(2017년01월)

연번	차량등록번호	소유자	반송일자	주 소	반송사유	비고
1	경남81사5668	승강*****의회	2017.01.0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운정*길***	이사감	
2	46저5839	홍*식	2017.01.0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창남*길**	수취인불명	
3	92라3843	최*열	2017.01.0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양*길**	이사감	
5	89버6525	예***재(주)	2017.01.0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번지 ****호	이사감	
6	97더5345	박*대	2017.01.0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길**	주소불명	
7	94어4350	최*열	2017.01.0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양*길**	이사감	
9	82고4090	표*윤	2017.01.0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구산*길 ***-*	이사감	
10	경남98가5702	(주)대**기	2017.01.0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	이사감	
11	86나1023	이*근	2017.01.0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	이사감	
12	02구4596	오*규	2017.01.06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춘전길 *-**	수취인불명	
13	49서2103	강*희	2017.01.0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당동*길****-*	수취인불명	
14	84머2202	표*수	2017.01.0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길,*층***호	원인불명	
15	64가6411	서*자	2017.01.06	경상남도 거창군 동동*길 **,***동 ***호	원인불명	
16	85오4708	임*선	2017.01.0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길*,***호	수취인불명	
17	경남02노7411	YA**** **MI	2017.01.0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길 ***-*	이사감	
18	81주3611	김*희	2017.01.06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깊은골길 ***	이사감	
19	84다5330	정*태	2017.01.06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달맞이길 ***-*	수취인불명	
20	경남82다8178	서*부	2017.01.06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어인안길 ***-*	이사감	
21	경남81아5608	조*홍	2017.01.06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웅양로 ****	이사감	
22	65너3912	송*고	2017.01.06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길 **	이사감	
23	10거5790	배*의	2017.01.0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죽전*길**	이사감	
24	경남80루7589	김*기	2017.01.06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	이사감	
25	96주5004	안*영	2017.01.1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길 **	이사감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1항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부과 및 독촉 고지서, 압류예고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위반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등
- 공고기간 : 2017. 03. 24. ~ 2017. 04. 07.(15일간)
- 공고대상 : 붙임
- 문 의 처 : 거창군청 민원봉사실 민원담당(☎055-940-3293)

공고기간 내에 처분사항에 대하여 서면, 구술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경과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기간 위반자 중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과태료 행정처분전 자진 납부 시 부과금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같은법 제24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후 납부 지연 시 가산금 최고 77%부과(가산금 5%, 증가산금 매월 1.2%)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납부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의거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자동차,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조치됨을 공고합니다.

2017년 03월 23일

거 창 군 수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 내역(01월분)

연번	차량등록번호	소유자	최초과태료	반송일자	주 소	반송사유	등기번호	비고
1	40소 6907	이*환	300,000	2017.01.17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길 **	이사감	1603504026532	
2	82마 1396	경**품(주)	60,000	2017.01.20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길 ***	폐문부재	1603504026537	
3	경남06 로8367	권*원	400,000	2017.01.20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중앙시장길 ***-	폐문부재	1603504026515	
4	경남02 모6699	권*원	400,000	2017.01.20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중앙시장길 ***-	폐문부재	1603504026515	
5	73두 8059	박*규	20,000	2017.01.2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	폐문부재	1603504026587	
6	97더 5838	서*화	300,000	2017.01.2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 ***,***동***호	폐문부재	160350426584	
7	42우 5193	하*윤	20,000	2017.01.2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지내길 ****-	폐문부재	1603504026566	
8	42버 3898	하*윤	110,000	2017.01.2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지내길 ****-	폐문부재	1603504026588	
9	81누 6057	이*정외 1(이*영)	300,000	2017.01.2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길**	폐문부재	1603504026589	
10	26무 9487	이*일	20,000	2017.01.2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길**,***동 ****호	폐문부재	1603504026570	
11	16거 4600	서*환	300,000	2017.01.2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마동길 ****-	폐문부재	1603504026548	
12	15어 4152	박*이	300,000	2017.01.2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길 ***-	폐문부재	1603504026581	
13	26어 8102	한*수	30,000	2017.01.2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길 ***-	폐문부재	1603504026534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공고

공고 제2017-430호

「소하천정비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17년도 소하천 정비 시행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및 같은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8일

거 창 군 수 (직인)

1.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소하천 명	사업 개요									비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 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 (築堤)	호안 (護岸)	기타	착공	준공		
유령 소하천	유령 소하천 정비공사	경남 거창군 옹양면 죽림리 1154-8	경남 거창군 옹양면 죽림리 677-1	1,200	1,200		'17.04월	'18.04월	재해에 강한 친수형 소하천 정비	토지 · 지장물 보상 1식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2. 군계획시설(방재시설 : 하천) 결정(변경)조서

■ 하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 장 (k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 정	62	유령천	소하천	웅양죽림 1116-2	웅양죽림 1154-3		1.65	6~11	15,140	거고43호 ('08.9.25)	
변 경	62	유령천	소하천	웅양죽림 1154-8	웅양죽림 60-3		1.70	6~11	26,017	-	

■ 군계획시설(방재시설 : 하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62	유령천	○당초 하천구역 면적 : 15,140㎡ ○변경 하천구역 면적 : 26,017㎡	○ 유령소하천 정비공사 시행에 따른 일부구간 하천구역 증가 ○ 소하천정비법 제8조(소하천정비시행 계획수립)에 따른 변경

3. 군계획시설(방재시설:하천) 실시계획인가

1) 사업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행규모			시행구간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연장	폭원	면적 (㎡)	시점	종점		
방재 시설 (소하천)	유령소하천 정비공사	웅양면 죽림리 1154-8 번지 일원	L=1.2km	B=7~13m	21,712	웅양면 죽림리 1154-8	웅양면 죽림리 677-1	거창군고시 제2008-43 (2008.9.23)	2017. 4~ 2018. 4

2) 사업 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나) 성 명 : 거창군수(건설과장)

3) 관계도면 : 게재 생략[거창군 도시건축과(055-940-3583), 건설과(055-940-3643)에 비치]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붙임)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 거창군 >

(2016년)

수계 (水系)명	소하천 번호	소하천명	소하천 총길이 (m)	유역 (流域) 면적 (km ²)	계획 하천 폭 (m)	정비 계획																	
						전체		정비된 부분			이번 시행									장래 계획			
						사업량(m)		사업량 (m)		위치		사업량(m)		사업비 (백만원)		사업효과			사업량(m)		사업비 (백만원)		
						축제 (築堤)	호안 (護岸)	사업비 (백만원)	축 제	호 안	사업비 (백만원)	시작 하는 지점	끝나 는 지점	축제	호안	국비	지방 비	농경 지 (ha)	건물 (동)	수질 (pp m)		축제	호안
낙동강	62	유령천	1,700	1.42	6.0 ~ 11.0	1,700	1,700	2,000	-	-	-	웅양 죽림 1154 -8	웅양 죽림 677 -1	1,200	1,200	1,000	1,000	6.4	1	-	-	-	-

세부정비 시행계획

1. 소하천정비공사의 명칭 : 유령소하천 정비공사

2. 소하천정비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소하천정비공사의 목적

- 재해에 강한 친수형 소하천 정비로 재해예방 증대와 하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소하천정비공사의 개요

- 1) 위 치 : 경남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일원
- 2) 사 업 량 : 하천정비 L=1,200m
- 3) 사 업 비 : 2,000백만원

3. 소하천정비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거창군수(건설과장)

나.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4. 소하천정비공사의 착수 및 준공 예정 연월일

- 2017. 04. ~ 2018. 04.

5.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

- 편입용지조서 참조

6. 준공된 소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자 : 거창군수(건설과장)

7. 발생 예상 폐천부지(廢川敷地)의 면적 : 해당없음

8. 실시설계도서 : 거창군청 건설과(하천담당) 비치

9. 예정 공정표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10. 사업비 및 자금의 조달계획서

(금액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비고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유령소하천 정비공사	2,000	-	300	1,700	-	-	국비 50% 군비 50%

11. 소하천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가. 소하천정비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 낙동강유역환경청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거창군수 :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에 따른 의제사항 협의 완료
 - 군관리계획(방재시설:하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별첨)
 - 농지전용, 산지전용, 국유재산 협의 등

12. 소하천정비공사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안내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하천담당

다. 이의신청 :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 편입용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55,901	21,712					
1	웅양면 동호리	1313-4	천	1,372	200		(건설부)			
2	웅양면 죽림리	1154-8	천	1,349	1,349		(건설부)			
3	"	1154-47	답	46	46		(거창군)			
4	"	761-1	답	20	20		(거창군)			
5	"	304-9	도	325	325		(농림수산부)			
6	"	758-1	답	210	210		(거창군)			
7	"	305-4	답	212	212		(거창군)			
8	"	305-1	구	1,160	23		(농림수산부)			
9	"	305-3	답	284	284		(거창군)			
10	웅양면 동호리	1313-33	답	1,340	52		경상남도			
11	웅양면 동호리	1313-3	답	448	74		(거창군)			
12	웅양면 죽림리	1154-48	답	450	450		(거창군)			
13	"	1153-27	구	3	3		(농림수산부)			
14	"	1153-16	구	106	106		(농림수산부)			
15	"	252-7	답	229	229		(거창군)			
16	"	304-15	답	175	175		(거창군)			
17	"	304-14	답	40	40	웅양면 죽림리 376	신용균			
18	"	304-8	구	870	870		(농림수산부)			
19	"	304-13	답	87	87		(거창군)			
20	"	304-4	구	275	18		(농림수산부)			
21	웅양면 죽림리	304-12	답	155	155		(거창군)			
22	"	304-11	답	109	109		(거창군)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23	"	304-10	답	53	53		(거창군)			
24	"	243-3	도	1,912	88		(건설부)			
25	"	1166	도	2,288	75		(건설부)			
26	"	1153-17	구	79	79		(농림수산 부)			
27	"	278-6	도	465	55		(건설부)			
28	"	278-11	답	55	55	웅양면 죽림리 212	백갑순			
29	"	273-3	구	1,215	170		(농림수산 부)			
30	"	278-10	답	178	178	부산사상구주례동10-21 반도보라매머드타운 109-2102	신중인			
31	"	263	도	1,340	207		(농림수산 부)			
32	"	278-9	답	84	84	경기도여주시여양로 341-10 102-911	신중엽			
33	"	278-8	답	10	10	웅양면 죽림리 206	최중복			
34	"	271-6	답	433	433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 동94-2 국제그린아파트2-2001	신용금			
35	"	271-4	답	55	55		(거창군)			
36	"	271-3	답	2	2		(거창군)			
37	"	271-5	답	320	320	웅양면 죽림리 212	이택균			
38	"	271-2	답	75	75		(거창군)			
39	"	264	제	675	675		(농림수산 부)			
40	"	269-8	답	153	153	웅양면 죽림리 202	최석렬			
41	"	269-5	답	70	70		(거창군)			
42	웅양면 죽림리	269-7	답	198	198	웅양면 죽림리 205	정석용			
43	"	269-4	답	73	73		(거창군)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44	"	269-6	답	93	93	웅양면 죽림리 154	이정균			
45	"	265	대	91	91	웅양면 죽림리 202	최석렬			
46	"	268-4	답	102	102	웅양면 죽림리 154	이정균			
47	"	268-3	답	83	83	웅양면 죽림리 156	이인화			
48	"	1227	도	587	22		(농림수산부)			
49	"	1211-1	답	993	993	웅양면 죽림리 769	이계영			
50	"	1162	도	11,499	733		(건설부)			
51	"	223	전	42	42		(건설부)			
52	"	221-3	답	12	12	웅양면 운평길 68-25	이현도			
53	"	221-2	답	63	63		(거창군)			
54	"	222-1	답	149	149		(거창군)			
55	"	220-2	답	71	71	웅양면 운평길 67-14	이영숙			
56	"	220-1	답	252	252		(거창군)			
57	"	216-4	답	27	27	웅양면 운평길 67-14	이영숙			
58	"	188-5	구	46	46		(농림수산부)			
59	"	1153-19	구	93	93		(농림수산부)			
60	"	1162-3	도	119	119		(건설부)			
61	"	216-3	답	266	266		(거창군)			
62	"	196-4	답	151	151		(거창군)			
63	웅양면 죽림리	1153-21	구	10,558	5,961		(농림수산부)			
64	"	1210-1	답	151	151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운평길 40-11	백이남			
65	"	1209-1	답	143	14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693-1	이지환			
66	"	1208-1	답	189	189	대구광역시달서구도원 동1438 대곡사계절타운314-140 1	이일형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67	"	1222	구	204	16		(농림수산 부)			
68	"	1207-1	답	102	102	대구광역시달서구도원동1 438 대곡사계절타운314-1401	이일형			
69	"	1221	도	854	850		(농림수산 부)			
70	"	1206-1	답	122	122	웅양면 죽림리 154	이육균			
71	"	1205-1	답	68	68	웅양면 죽림리 156	이인화			
72	"	1219	구	605	126		(농림수산 부)			
73	"	1220	도	580	86		(농림수산 부)			
74	"	1199-1	답	16	16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운평길 68-25	이현도			
75	"	111-12	답	218	218	웅양면 죽림리 156	이인화			
76	"	1198-1	답	278	278	경상남도 창원시 사림동 141-2	백혜자			
77	"	1197-1	답	65	6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31-30	백혜숙			
78	"	1080-3	답	82	82		(거창군)			
79	"	1080-4	답	141	141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운평길 67-7	이택화			
80	"	1086	구	330	21		(농림수산 부)			
81	"	1085	도	601	8		(농림수산 부)			
82	"	1078-12	답	166	166	웅양면 죽림리 900	문우개 외 2인			
83	"	1078-18	답	162	162	웅양면 죽림리 900	문우개 외 2인			
84	웅양면 죽림 리	1078-11	답	218	218		(거창군)			
85	"	1078-17	답	169	169	부산 북구 만덕동 256-43	이동기			
86	"	1078-10	답	103	103		(거창군)			
87	"	1078-16	답	98	98	부산광역시사상구주례동10-21 반도보라메머타운111-1402	정순용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88	"	1078-9	답	37	37		(거창군)			
89	"	1078-15	답	72	72	부산광역시사상구주례 동10-21 반도보라매머드타운111 -1402	정순용			
90	"	1078-8	답	56	56		(거창군)			
91	"	1078-14	답	93	93	웅양면 죽림리 637	신무성			
92	"	1078-13	답	73	73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1170-1 화명동대림타운203-1301	이명화			
93	"	1072-8	답	68	68	웅양면 죽림리 643	이귀임			
94	"	1072-7	답	225	225	웅양면 죽림리 643	신을성			
95	"	622-11	답	60	60	거창읍 하동 54-11	신정성			
96	"	1178	도	1,990	125		(건설부)			
97	"	1072-6	잡	66	66	웅양면 죽림리 686-7	누룩재마을회			
98	"	1072-3	도	41	41		(거창군)			
99	"	619-2	도	7	7		(거창군)			
100	"	622-4	도	430	4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647	신두성			
101	"	695-4	답	96	96	인천광역시중구흰마위 로14 211-802	이창진			
102	"	695-3	답	33	33		(거창군)			
103	"	693-3	도	20	20		(거창군)			
104	"	693-8	답	166	166	경상남도창녕군창녕읍 말흘리715-3 대동상아빌라시동203호	성다인			
105	웅양면 죽림리	693-7	답	36	36		(거창군)			
106	"	693-6	도	136	67		(거창군)			
107	"	692-4	도	142	14		(거창군)			
108	"	1079-2	답	71	71		(거창군)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109	"	692-3	도	17	17		(거창군)			
110	"	1079-3	답	268	268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6길 18	유성숙			
111	"	1079-1	답	67	67		(거창군)			
112	"	691-7	답	22	22		(거창군)			
113	"	691-4	잡	567	51		(거창군)			
114	"	691-6	답	39	39		(거창군)			
115	"	691-2	도	20	20		(거창군)			
116	"	688-7	답	13	13	응양면 죽림리 668	신우성			
117	"	688-2	도	7	7		(거창군)			
118	"	1078-7	답	66	66		(거창군)			
119	"	618-2	도	17	6		(거창군)			
120	"	1072-5	답	127	127		(거창군)			
121	"	1072-4	답	5	5		(거창군)			
122	"	686-5	답	17	17		이종식			
123	"	686-4	도	189	90		(거창군)			
124	"	686-11	답	266	266	주상면 거기2길 124	정순 외 1인			
125	"	686-10	답	270	270		(거창군)			
126	응양면 죽림 리	686-6	답	10	10		이종식			
127	"	677-1	전	38	38	주상면 거기2길 124	정순 외 1 인			

14. 기타사항

-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청 건설과(하천담당 ☎ 055-940-36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위치도

위 치 도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조례·규칙의 입법 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3월 28일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이 '13.1.1.개정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만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등 포상금 지급대상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규정

- 취득세 등 도세와 국가 및 도에 귀속되는 세입의 경우 그 세원이 군에 귀속되지 않음에도 군비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도세와 국가 및 도에 귀속되는 세입을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4. 입법예고 : 2017. 3. 29 . ~ 2017. 4. 18.(20일간)

5. 조 례 안 : 붙임

6.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재무과)
- 전화 : 055-940-3252
- FAX : 055-940-321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규정안 내용	의 견	비고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거창군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군세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에서 규정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제5조에 따른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공적을 말한다.
 4.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 가.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
 - 나.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에 3에 해당하는 금액
 - 다.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에 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이하의 금액. 다만, 다른 규정 등에 따라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6항에 따라 법 제146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제보 및 신고(이하 “신고”이라 한다)하는 경우로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감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공),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도록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 내용에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민원봉사실장,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포상금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포상금 지급신청 등)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3호서식(포상금지급신청서)에 따라 소관부서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 내용의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6조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포상금지급신청을 받은 경

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심의·의결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포상금의 환수)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금 관련 대장의 비치) 포상금 지급 부서에서는 포상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관련 서류 및 대장(별지서식 4호 및 별지서식 5호) 등을 비치하고 5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재무과
입 안 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재무과장 신 영 수
	팀 장 직위·성명	세입관리담당 최 주 현
	담 당 자 성명(전화)	조 현 정 (☎940-325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p> <p>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p> <p>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p> <p>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p> <p>4.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p> <p>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거창군 세입금(군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p>	<p>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거창군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1.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군세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를 말한다.</p> <p>2.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에서 규정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p> <p>3.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제5조에 따른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공적을 말한다.</p> <p>4.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p>	<p>띄어쓰기</p> <p>지방세기본법에 세입징수포상금 규정 신설('13.1.1)됨에 따라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함.</p> <p>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8항에서 위임한 사항만 규정함: 제146조제1항제3호~제5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조례로 위임</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직에 포함한다. 다만,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직을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p>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한다.</p> <p>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에 3에 해당하는 금액 <p>다.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에 5에 해당하는 금액</p>	<p>법 제146조 제 8 항에서 위임한 지급 기준을 정함</p> <p>현행 조례 제 1항제4호·제 5호는 법 제 146조제1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영 제105조의2에 규정되어 있음. 위임사항 아님.</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5</p> <p>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p> <p>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 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p> <p>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한다.</p> <p>제4조(지급한도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p> <p>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p> <p>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3.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금액. 다만, 다른 규정 등에 따라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② 제2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p> <p>제4조(포상금 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p> <p>1.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p> <p>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p> <p>제5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6항에 따라 법 제146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제보 및 신고(이하 “신고”이라 한다)하는 경우로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감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도록 한다.</p> <p>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 내용에</p>	<p>현행과 같음. 제2조제1항제3호는 이미 제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되어있음</p> <p>단서 삭제</p> <p>「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6항에서 위임한사항 규정</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5조(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p> <p>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p> <p>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p> <p>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p> <p>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p>	<p>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p> <p>③ 군수는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p> <p>제6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민원봉사실장,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p> <p>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p> <p>2.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p> <p>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p> <p>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p> <p>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p> <p>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p> <p>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직제개편에 따른 위원명 변경 위원회 심의사항 정비</p> <p>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6조(대장 비치) 세입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징수촉탁 교부금 세입 포상금 지급대장을 갖추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p>	<p>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포상금 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된다.</p> <p><삭 제></p>	<p>관련 조문 삭제에 따라 서식 삭제 제10조로 이동</p>
<p>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의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②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p> <p>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p>	<p>제7조(포상금 지급신청 등)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3호서식(포상금지급신청서)에 따라 소관부서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 내용의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p> <p>③ 위원장은 제6조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문장 정비</p>
<p>제8조(지급)</p> <p><신 설></p> <p><신 설></p> <p>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p>	<p>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포상금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p> <p>②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p>	<p>위원회 기능 강화</p> <p>포상금 지급절차 규정 구체화</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p> <p>제9조(환수)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p>	<p>상으로 심의·의결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p> <p>제9조(포상금의 환수)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는 상위법령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제9조제3항은 상위근거법령이 없는 규제조항으로 삭제</p> <p>민법 제379조에 따라 5% 이율 적용함</p> <p>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p>
<p>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0조(포상금 관련 대장의 비치) 포상금 지급 부서에서는 포상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관련 서류 및 대장(별지서식 4호 및 별지서식 5호) 등을 비치하고 5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p>	<p>서식 삭제 등 내용 정비하여 제6조에서 이동</p>

관련법령

□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⑨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율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1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5백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5천5백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② 법 제1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율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50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천25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③ 법 제1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④ 법 제13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등
2.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

⑤ 법 제13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공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접수방식			
<p>1. 제보자 인적사항</p> <p>○ 성 명: ○ 생년월일:</p> <p>○ 전화번호:</p> <p>○ 주 소:</p>							
<p>2. 피제보자 인적사항</p> <p>○ 성 명: ○ 생년월일:</p> <p>○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p> <p>○ 주 소:</p> <p>○ 사업장소재지:</p>							
<p>3. 제보내용</p> <p style="text-align: center;">※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p>							
<p>년 월 일</p> <p>제 보 자: (인)</p> <p>귀하</p>							
<p>처리자 : 직급 성명 (인)</p>				<p>결 재</p>	<p>담당자</p>	<p>담당</p>	<p>과장</p>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접수방식							
<p>1. 신고자 인적사항</p> <p>○ 성 명: ○ 생년월일:</p> <p>○ 전화번호:</p> <p>○ 주 소:</p>											
<p>2. 피신고자 인적사항</p> <p>○ 성 명: ○ 생년월일:</p> <p>○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p> <p>○ 주 소:</p> <p>○ 사업장소재지:</p>											
<p>3. 은닉재산 및 숨은세원 신고내용</p> <p style="text-align: center;">※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p>											
<p>년 월 일</p> <p>신 고 자: (인)</p> <p>귀하</p>											
<p>처리자 : 직급 성명 (인)</p>				<p>결 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담당자</td> <td style="width: 33%;">담당</td> <td style="width: 33%;">과장</td> </tr> <tr> <td style="height: 30px;"></td> <td></td> <td></td> </tr> </table>	담당자	담당	과장			
담당자	담당	과장									

[별지 제4호서식]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징수 연월일	징수자		체납자			징수내역				지급일	포상금 지급액	담당 확인
	직급	성명	성명	생년 월일	주소	연도 기분	과세 번호	세목	징수액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제 보 자		구분	세목	납기	징수액	납세의무자			징수 월일	지급일	포상금 지급액	담당 확인
직 급 (주 소)	성명					성명	생년 월일	주소				

※구분란에는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공,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숨은세원 발굴 등을 표시할 것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